충청남도-시·군 공통 중점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 일 시: 2019. 4. 24.(수) ~ 4. 26.(금)

● 장 소 : 제주 오션스위츠호텔





충청남도-시 군 공통 중점관리 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 워크숍 개요

□ 목 적

- O 도-시·군 공공갈등 관리 및 현안 담당자 합동 연수 기회 제공
- 도-시・군 공통 중점관리 현안 해소 방안 집중 토론
 - ※ 중점관리 현안: 가축사육제한 인접 시군간 축사 경계지역 설정
- ⇒ 도-시・군 간 구체적 방안 도출로 선제적 갈등 대응 공조 체계 강화

□ 추진방향

- O (정책공유) 도 공공갈등 관리계획 및 갈등관리전문기구 사업계획
- O (정보교류) 도-시·군 공통 중점관리 현안 집중 토론
- O (역량제고)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타 지역 사례 연구
- O (협력강화) 공공갈등 예방과 대응 협력 방안 토론 및 의견 수렴

□ 워크숍 개요

- 일 시: 2019. 4. 24.(수) 14:00 ~ 4. 26.(금) 12:00 (2박3일)
- O 장 소: 제주 오션스위츠호텔 (제주시 탑동 해안로 74)
- O 대 상: 36명
 - 도(직속기관, 사업소 포함) 공공갈등 현안 담당 관계자: 10명
 - 시 · 군 공공갈등 관리 담당자 및 현안 담당 관계자 : 20명
 - 충남연구원:6명
- O 주최·주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Ⅱ. 주요 행사계획 및 일정

□ 주요 행사계획

- O 공공갈등 관리계획 설명
- 갈등관리전문기구 사업계획 설명
- O 갈등전문가 초청 특강
 - 공공갈등의 예방, 조정, 치유
 - 제주도 공공갈등관리 사례 (제주 축사 입지 갈등 현황과 분석)
- O 현장 견학: 해군기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축산 관련 지역
- O 토론 및 발표 : 시·군 공공갈등 현안 집중 토론 및 의견수렴

□ 행사일정

O 4. 24.(수) 〈1일차〉

시 간		내 용	비고
13:30 ~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 14:03	3 ′	• 개회 및 국민의례	갈등정책팀장
14:03 ~ 14:10	7 ′	。 참석자 소개	"
14:10 ~ 14:20	10 ′	。 인사말씀	공동체정책관
14:20 ~ 14:30	10 ′	。 2019 공공갈등 관리계획 설명	갈등정책팀장
14:30 ~ 14:40	10 ′	。 2019 공공갈등전문기구 운영계획 설명	충남연구원 (사회통합 연구실장)
14:40 ~ 16:10	90 ′	。 갈등전문가 초청 특강 I - 시・군 어업 갈등	충남연구원 (김종화 박사)
16:10 ~ 16:30	20 ′	· 휴 식	
16:30 ~ 18:00	90 ′	시·군 공공갈등 현안토론 I인접 시·군간 축사 갈등 사례, 분석 결과 공유	공동체정책관
18:00		。 1일차 폐회	

O 4. 25.(목) 〈2일차〉

시 간	시 간 내 용			
07:30 ~ 09:00		· 조 식		
09:00 ~ 10:30	90 ′	。 갈등전문가 초청 특강 Ⅱ - 제주 축사 입지 갈등 현황과 분석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10:30 ~ 12:00	90 ′	。 공공갈등 현장 이동		
12:00 ~ 13:00	60 ′	· 오 찬		
13:00 ~ 18:00	300 ′	제주 공공갈등 현장탐방 I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 갈등	제주환경운동연합	
18:00		。 2일차 폐회		

O 4. 26.(금) 〈3일차〉

시 간		내 용	비고
07:30 ~ 09:00		· 조 식	
09:00 ~ 10:30	60 ′	 공공갈등 현안토론 Ⅱ 및 종합토론 인접 시·군간 축사 갈등 시군별 현황 공유 종합토론	공동체정책관
10:30 ~ 12:00	90 ′	。 제주 공공갈등 현장탐방 Ⅱ - 제주도내 축산 입지 갈등	
12:00 ~ 13:00	60 ′	• 오 찬	
13:00		。 3일차 폐회	

|||||| 목 차 |||||||

I.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계획6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П.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사전 예방 15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Ⅲ.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25
	충남연구원 고승희 연구위원
IV.	자율관리어업과 갈등관리방안 33
	충남연구원 김종화 책임연구원
V.	제주도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54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계획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1. 충청남도 공공갈등 관리 목표와 과제

목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더 행복한 충남 실현



저략

- 공 공 갈 등 선 제 적 · 사 전 적 예 방 강 화
- → 적 극 적 인 갈 등 조 정 으 로 갈 등 해 소·해 결



추진 방향

- '19년을 공공갈등 해결 '원년의 해'로 갈등해소에 전 행정력 집중
- 공공정책 추진과정의 도정 신뢰 향상을 위한 예방행정 확립
- + U.관 협력 강화, 현장 중심 맞춤형 대응으로 갈등해소 주력



① 선제적·사전적 예방 시책

- ① 「갈등 사전진단제」 추진
- ②「갈등경보제」운영
- ③ 현안부서(시·군)와 협업 및 민·관 역량교육 강화

추진 과제

② 사후 갈등 조정 시책

- ①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해소 방안 마련
- ②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활성화
- ③ 갈등관리전문기구 지속 운영

③ 당면 사항 추진

① 「갈등조정전문관」 신설 추진

2. 주요 추진 과제

[1]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한 선순환 갈등정책 추진

- ◈ 공공정책 추진과정의 도정 신뢰 향상을 위한 예방행정 확립
- ◈ 공공갈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갈등대응 역량 강화

① 공공갈등 사전진단제 및 갈등경보제 추진

- O 50억원 이상 정책사업 추진 시「사전진단제」추진 확대
- 민원실태, 언론동향 등 관련자료 모니터링을 통한「갈등경보제」추진
- O 공공갈등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
 - 갈등 담당관 워크숍('19.3.), 도, 시·군 공무원 역량교육(3회)

② 공공갈등 현장컨설팅 및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 현장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갈등 예방
- O 시·군별 조정 전문가 양성을 통해 갈등 대응 시 연계 협력시스템 가동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사항 반영(18.12)], 갈등조정전문관 신설 검토 추진

[2] 공공갈등 협업 강화로 도민 불편사항 해소

- ◈ '19년 공공갈등 해결 '원년의 해' 로 삼아 갈등해소에 전 행정력 집중
- ◈ 갈등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갈등해소 방안 모색

① 사회적 합의 기반 조정관리 추진

- O 갈등 당사자 간 대화로 조정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
 -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지역 「상생협력 민·관·군 협의회」운영
 - ▶ 용역 최종보고서에 제안된 안건, 주민 제안 안건 등 사업 검토·추진
- O 도,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민·관 현장컨설팅 심의·자문 등을 통한 해소방안 모색

② 장기 미해결 공공갈등 해소 방안 마련

- 공공갈등 적극적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분기별)
 - (대상) 중점과제(4건), 부서자체관리(13건) 등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의결 건
 - (내용) 실국별 갈등 해소방안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합리적 대응계획 수립

3. 주요 시책 및 협조사항

가. 공공갈등 민관 현장컨설팅 운영

□ 사업 목적

- O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
 - ➡ 공공갈등 요인 사전 해소로 실무자 피로감 해소 행정 효율성 제고

□ 추진 근거

- O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
 -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

□ 추진 방향

- O 공공갈등 선제적 예방과 합의 형성 촉진을 위한 현장컨설팅 실시
 - 공공갈등 분야별 전문가 등 외부자문 기능 강화
- O 현장 쟁점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민원 최소화 및 정책집행 실효성 확보

□ 추진 계획

[1단계] ۰ , . () 대상사업 선정 [2단계] 갈등 요인 분석 - 해당 시·군, 충남연구원 전문가 등과 사전 검토 회의 가 3 [3日] - 갈등 유형에 따라 조정 전문가를 선정하여 대화를 현장컨설팅 실시 통한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 지원 [4단계] - 갈등조정 전문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사안별 해소방안 수립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으로 갈등해소 방안 마련 [5단계] 모니터링 실시

□ 협조 사항

O 시·군 갈등 발생 또는 예방 필요시 현장컨설팅 요청(연중 수시)

가

나. 시·군 갈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사업 목적

- O 시·군 갈등사안 대응 시 연계 협력할 민간 네트워크 부재로 조정·협조 등 신속 대응 한계
- ➡ 갈등 사전예방 및 적극적 사후 대응을 위한 갈등 조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18.12.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자문 사항)

□ 추진 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
 -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

□ 추진 방향

- O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및 운영(시범 실시)
 - 대상 : 갈등 현안이 많은 시군의 갈등 조정 역할이 가능한 민간인
- O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상반기)
 - 국무조정실, 도 갈등전문기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등 갈등전문기관과 공동 추진
 - ※ 갈등 교육, 워크숍, 사례 연구 등 실시
- O 갈등 현장 전문가 등과 공동 대응(하반기)
 - 민·관 현장컨설팅과 연계하여 사전경보 시 협력 및 사전 조정 수행
 - 시·군 갈등 사안 발생 시 조정 역할 공동 수행 ※ 2020년, 전체 시·군으로 확대 실시

□ 협조 사항

- O 시·군 갈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협조('19년 3~5개 시군 시범 실시)
 -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 또는 갈등 조정 경험자 추천

다. 시·군과 협업 및 갈등 대응 역량 강화 교육

□ 사업 목적

- O 관련부서 및 시·군 간 협력부진 및 갈등 상황 회피 분위기 극복
 - ➡ 갈등 발생을 문제 삼지 않고, 갈등 대처에 적극적인 조직 분위기 조성

□ 추진 근거

- O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4조제3호
 -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추진 방향

- 갈등 관련 정보(동향, 대응방안 등) 및 교육연수 기회 제공
- O 갈등관리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및 갈등관리 기법 공유 등 대응 능력 향상과 효율적인 대응방안 모색
- 공공갈등 관리카드 작성 운영 시 실무부서와 협업 강화

□ 추진 계획

도, 시·군 공공갈등 담당관 합동워크숍 추진

('19.4월)

• 때·곳: '19.4.24. ~ 26.(3일) / 제주도

• 인 원 : 35명 (도, 시·군 관계관)

• 주 관 : 갈등관리 전문기구(충남연구원)

•내 용:전문가 특강, 현안문제 발표 및 토론,

협력강화 방안, 사례 연구 등

역량교육 실시

- ●도, 시·군 공무원, 지방공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운영
- 갈등관리 역량 강화, 실무관련 지식 공유 가능한 교육 설계
- ●갈등 상황에 대한 맞춤형 교육 추진

□ 협조사항

O 부서·시군의 갈등 대응 역량 강화 교육에 적극 참여

참고 1 공공갈등 관리 목록 분석표

갈 등 명	수 준	유형	비고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중점관리]	조정기	환경	조정 중
아산 인주산업단지 조성 갈등 예방 [중점관리]	표출기	개발	사전진단
가축사육제한 인접 시·군간 축사 경계지역 갈등 예방 [중점관리]	표출기	환경	사전진단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교착기	소송	항소 중
내포 천연가스열병합발전소 추진 [중점관리]	해소기	환경	
345kV 북당진~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심화기	국책	국책사업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심화기	국책	국책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해소기	개발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교착기	국책	국가사무
가축분뇨 신재생 에너지화사업	표출기	환경	사전진단
금산 군북면 불산공장 이전	해소기	소송	항소 중
서산-당진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조정기	환경	みず経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심화기	소송	소송 중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조정기	환경	조정 중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심화기	개발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노선	조정기	개발	환경평가
「천안아산역」택시사업구역	교착기	이해 (경계)	

공공갈등 실태 및 분석 종합

□ 공공갈등 대상 : 18건(중점관리4, 부서자체관리13, 도지사 관심사항1)

□ 공공갈등 실태 및 분석

① 갈등 수준별 분석: 5단계

(1단계) 표출기(3건) : 인접 시·군간 축사 경계지역 갈등 등 ※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사전진단제 대상으로 결정 7)

[2단계] 심화기(4건) :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등

[3단계] 조정기(4건)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등

[4단계] 교착기(4건) :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등

[5단계] 해소기(3건) : 내포 천연가스열병합발전소 추진 등

② 갈등 유형별 분석

- 국책사업(국가사무): 3건
 - 345kV 당진화력~신송산 송전선로 건설, 예산 대술 채석단지 지정 등
- 소송(심판) 진행 중인 갈등: 3건
 - 논산 태화산업단지, 예산 대술면 폐기물매립장 설치 등
- 이해(경계) 관련 갈등 : 2건
 -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서천~군산간 공동조업 구역
-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 갈등:6건
 -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내포 천연가스열병합발전소 추진 등
- 개발 과정 상의 갈등:4건
 - 장항선 개량2단계 건설사업, 안면도 관광지 개발 등

□ 대책 및 추진계획

- **표출기(3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행정협의체 구성 및 전 문가 자문을 통해 사전 예방에 집중
- 심화기(4건)는 소송(1) · 국책사업(3)으로 도(민) 입장 차원 지속 건의
- **조정기(4건) 갈등 위주로 갈등 해소에 집주**(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
- 공공갈등 추진 사항 점검(매월) 및 공공갈등 토론회 개최(분기별)

참고 2 공공갈등의 과정 및 수준 진단 기준

수준	구분	판단기준
1단계	표출기 (발생)	이해당사자(세력)의 의견 제시가 나타나며 조직화가 진행되는 상태 (현수막 게시, 홍보물 배부,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등)
2단계	심화기 (대치)	이해당사자(세력)의 집단행동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진행되는 상태 (시위, 집회, 점거, 농성 등)
3단계	조정기 (대화)	이해당사자(세력) 간 협상이나 제3자에 의한 대화 등 조정이 진행되는 상태 (협상, 갈등조정, 공론토론 등)
4단계	교착기 (정체)	이해당사자(세력)의 행동이 중단 또는 보류되지만 의견 대립은 계속 되는 상태 (중재 없는 대치, 소송 진행 등)
5단계	해소기	이해당사자(세력) 간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거나 일방의 포기로 대치가 해소되는 상태
6단계	사후 단계	갈등 과정에서 받은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거나 공동체 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상태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사전 예방

- 충청남도 공동체정책관 김응규 갈등정책팀장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입지 갈등 사전 예방

 ❖ 도내 인접 시·군 간 경계지역에서 축사 입지에 따른 갈등 발생,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해 도, 시·군 간 협력 및 제도 개선 필요
 * '18년 공공갈등 중점과제 대상, 행정협의체 구성 및 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축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들은 매우 민감한 지역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시·군은 조례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지정하고 있으나,
 - 제한거리 : 최소(소, 말) 130m ~ 최대(돼지, 닭 등) 2,000m
-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는 축사의 경우 해당 시·군 축사 인허가에 대한 법 저촉사항은 없으나, 인접 시·군에는 근거리로 위치하여 악취 등 환경피해 유발 가능성이 큼 [사례 : 참고]

⇒ 근본적인 갈등예방을 위해 시·군 간 가축사육제한 조례 등 제도 정비 필요

■ 그동안 추진사항

- 공공갈등 사전진단 대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 : '18. 7.
 - '가축사육제한 관련 인접 시군간 갈등 예방'을 중점과제로 지정
- 가축사육제한 조례 관련 사군 의견 수렴을 위한 담당팀장 회의 : '18. 10.
- 「공공갈등 인식개선 문화행사」에서 정책 토론회 개최 : '18. 11.
- '가축사육제한 인접 시군간 축사 경계지역 설정' 갈등 영향분석 : '18. 12. ※ 협의체 구성을 통한 논의구조 형성, 법적 대응방안 마련 등 제안
- 도, 시·군 간「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운영 계획 수립: '19. 3.
- 제1차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개최 : '19. 4. 9.

■ 대응방향

-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운영으로 제도 정비 등 방안 마련
- 인접 타 시·도와의 경계지역 축사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정책 제안

사 레 인접 시·군 간 경계지역 축사입지에 따른 환경피해 갈등

- □ 예산군-아산시 경계지역 갈등 사례
 - O 갈등 개요
 - ▶ 축사 입지 지역은 예산군 내 위치하고 아산시와 경계 지역으로

┌ < 사업개요 > ──

○ 사 업 자 : ㈜농업회사법인 ○○

○ 건축위치 :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 건축용도 : 동·식물 관련 시설(계사, 계분장, 창고, 선별포장실) ○ 사업면적 : 총 대지면적 21.248㎡ / 총 연면적 12.455㎡ (8개동)

○ 지역/지목 :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하천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 ▶ 예산군 조례에 의한 민가와의 이격거리 요건은 충족(900m 이격)하고 있으나, 아산시 민가 지역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390m 이격)에 입지
- ▶ 이로 인해 예산군에서 축사 입지 인·허가가 진행되나, 실제 악취 등 환경 피해는 아산시에서 발생이 우려
 - 예산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산시 의견을 들어 허가를 불허 ('15.9)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16.8)하여 예정대로 축사 입지('17.9)
 - ※ (아산시 주민 의견) 축사는 아산시 주거지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며, 고품질 쌀생산 농경지로 국립종자원에 종자를 공급하는 채종단지임
 - 축사가 허가될 경우 농경지 수질오염과 함께 악취 등 지역주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되므로 건축허가는 진행되어서는 안됨



참 고 1 충청남도 가축사육 제한 및 지형 분석(갈등영향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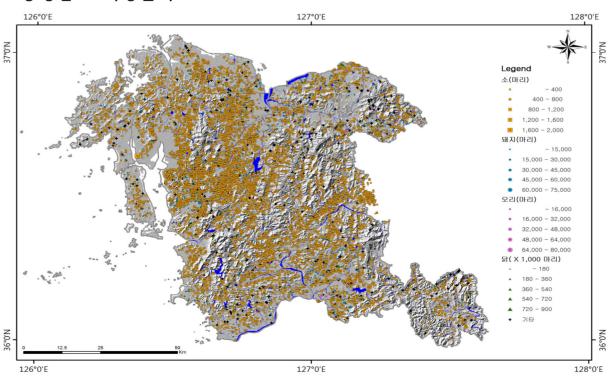
1. 도 가축사육제한지역 현황

- 15개 시·군 대부분 도시지역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사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음
-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지정은 모든 시·군이 가축사육 제한 에 대해 조례를 제·개정하여 지정한 상태이나, 인접 시군 경계지역의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 협의 규정은 없음

2. 도 지형 분석 결과

- 도에 분포하는 축사는 대부분 산지의 완사면 또는 구릉지에 분포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시·군 지역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축사는 주변 산지에 의해 바람 에 의한 악취의 확산이 저지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갈등의 사전예방을 위한 경계지역 축사입지 제한이 필요함

<충청남도 지형분석도>



참고 2 충청남도 축종별 제한거리 현황

	축종별 제한거리(m)										
시·군	소	말	양 (염소)	젖소	닭 (오리)	메추리	개	사슴	돼지	밀집지역	비고
천안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00	5호, 50m	
공주시	1,000	500	500	1,000	1,700	1,700	1,700	500	1,700	5호, 50m	
보령시	300	400	400	400	1,000	1,000	1,000	400	1,000	5호, 50m	
이산시	800	800	200	800	2,000	2,000	2,000	200	2,000	5호, 50m	
서산시	200	300	300	300	700	300	700	300	700	제한거리 내 10호	
논산시	500	500	500	500	2,000	2,000	2,000	500	2,000	10호, 50m	
계룡시					전	기역					
당진시	300	300	300	400	2,000	2,000	2,000	300	2,000	5호, 100m	
금신군	200	300	300	400	900	900	900	300	1,100	5호, 40m	
부여군	1,500	500	500	1,500	1,500	1,500	1,500	500	1,500	5호, 200m	
서천군	350	500	500	350	1,000	0	1,000	500	1,000	5호, 50m	
청양군	300	300	300	300	1,500	1,500	1,500	300	1,500	20ड़े, 200m	
홍성군	200	250	250	300	600	600	600	300	1,000	내포 5호, 1,100m	
예산군	200	200	1,000	300	1,000	1,000	1,000	1,000	1,000	5호, 50m	
태안군	130	130	300	300	1,500	1,500	1,500	300	1,500	5호, 200m	
최대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2,000	1,000	2,000		
최소	130	130	150	300	700	300	250	150	700		
평균	444	421	442	503	1,369	1,366	1,273	442	1,423		

참고3 관련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5(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 협의)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고시를 요청하려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1. 가축사육 제한의 목적
- 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범위
- 3.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효과
- 4. 그 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요청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가축사육제</u> 한구역의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토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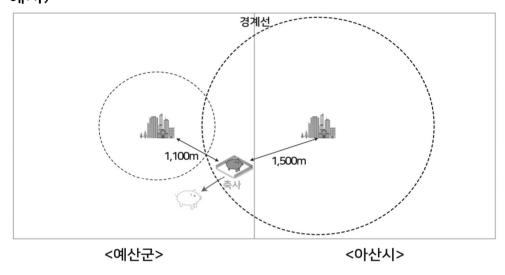
집중토론(2차 조정협의회) 안건

1. 사전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 2. 타 광역시·도 인접 시·군 간 사전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안건 1 사전 예방을 위한 시·군 조례 정비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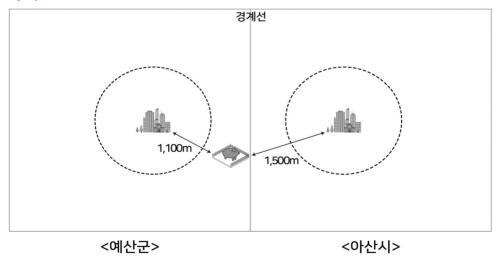
(1안) 인접 시·군의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적용

- 田 인접 시·군 양측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충족하면서 환경피해 갈등 최소화 측면에서 적정함.
- □ 시·군별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상이하여 가축사육제한 거리가 짧은 시·군은 거리가 길게 설정된 시·군 조례에 의해 축사입지 제한될 우려 예시)



(2안) 해당 시·군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인접 시·군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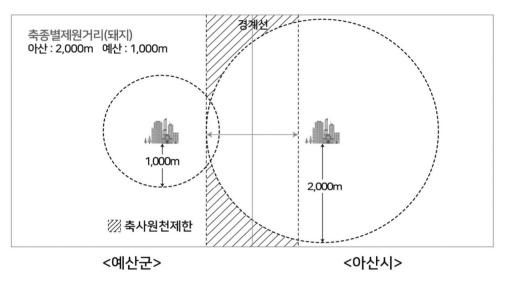
- 田 경계지역에서 어느정도의 환경피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2안처럼 인접 시·군 조례에 축사입지가 제한될 우려는 없음.
- □ 거리가 길게 설정된 시·군 주민 측에서 환경피해 제기 가능 예시)



(3안) 도내 전 시·군 경계선(하천 포함)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 지역에서 동일하게 가축사육 제한

- ⊞ 도 전역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방지 및 행정 신뢰성 확보
- □ 축사입지가 가능한 지역까지 원천 제한될 가능성 및 지자체의지형 등 여러 환경 및 특수성이 배제될 우려

예시)



(4안) 인접 시·군 간 경계지역 가축사육제한 관련 도 조례 제정 ※ 별도로 충청남도 가축사육제한 거리 근거 준칙(안) 마련

- ① 도 전역 통일된 기준 적용으로 민원인 혼선 방지 및 행정 신뢰성 확보, 도 전체 15개 시·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에 비해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높음
- □ 충청남도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 근거 없음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의해 협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제한할 수 있음

안건 2 타 광역시·도 인접 시·군 간 사전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 조례 개정(안)

- 안건 1에서 결정되는 조례 개정(안)과 내용은 동일하게 타 광역시·도 인접 시·군으로까지 확대 하는 사안으로
- 안건 1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안) 결과에 따름

□ 중앙부처 건의 방안

- 전국적인 사안으로 전국 확대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중앙 건의
 - 환경부에 경계지역 축사입지 제한 표준안 마련 건의 등
-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단체장 회의에「가축사육제한 관련 조 례 개정」전국 시행 제안

※ 참고: 제1차 가축사육 경계지역 조정협의회 개최 결과(19.4.9.)

- ☑ 15개 중 11개 시·군 조례 개정 동의, 제도 정비 필요성 공감 ※ 시·군은 관련법 개선 또는 도 조례 제정으로 동일한 규정 마련 주장
- ☑ 시·군별로 상이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관하여 **충청남도** 가축사육제한 거리 근거 마련 필요
- ☑ 환경피해 측면 뿐만아니라 축산업 등 종합적 고려

[보령시] 축종별 가축사육제한 거리 통일 필요

[천안시, 아산시] 경계지역만 가축사육제한 도 조례 제정 또는 법 개선 [청양군] 제한거리 통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2안은 축사 인허가권 침해 [충남연구원 장창석 연구원, 도 물관리정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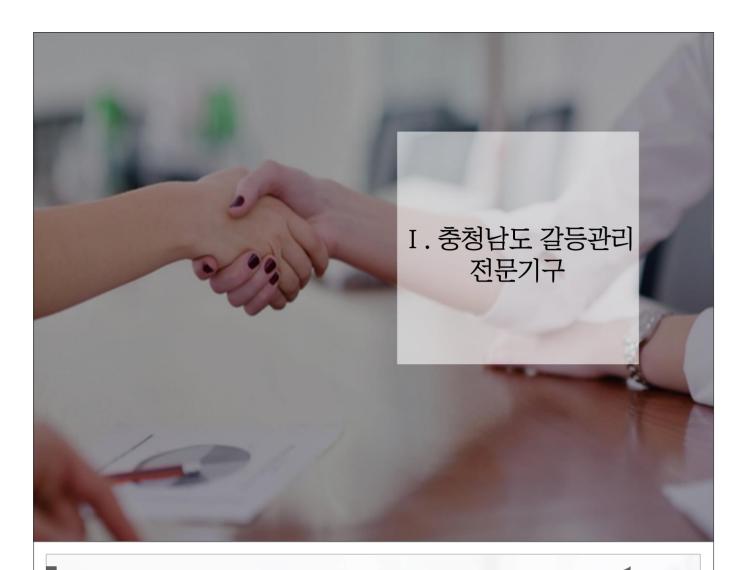
1안은 재산권 침해 소지, 2안이 환경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합리적 [충남연구원 이상진 위원] 행정협의회 의제 설정 필요[① 충청남도 가축사육제한 거리 근거 준칙(안) 마련, ② 조례 개정 여부 및 행정절차 관한 사항 등] [공동체정책관] 축산업 관계자 등 민원인 종합적 고려, 가축 사육두수등을 고려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기준 마련 필요

- 충남연구원 고승희 연구위원





- I .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1. 설립목적
 - 2. 주요 추진경과
 - 3. 주요 업무
 - 4, 2018 주요 추진 성과
- Ⅱ .2019 업무계획
 - 1. 추진방향
 - 2. 주요 업무계획
 - 3. 주요 업무계획추진 방향



Ⅰ.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설립목적

- ① 최근 공공갈등이 점차 복잡화, 다양화 되면서 체계적인 갈등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가 참여 필요
- ⊙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운영 중이며, 공공갈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등을 원활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 도모
- ① 지정근거
 -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 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 "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 · 활용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 지정서를 교부한다.

4



Ⅰ.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V)

주요 추진경과

- ⊙ 충남갈등관리포럼사무국 → 충남연구원(갈등관리 전문기관) 지정
 - ② 2006. 6 : 상생협력 · 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행정자치부→충청남도)
 - ② 2006. 7: 상생협력·갈등관리 포럼 운영계획 통보(충청남도→연구원)
 - ② 2006. 10.: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 창립
 - **②** 2007, 5, : 포럼정관 개정에 따른 사무국 설치
 - ⊙ 2007. 5. 23. : 포럼운영기관 지정협약(충청남도↔충남발전연구원)
 - ② 2007 ~ 2016 :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운영
 - **②** 2016. 5. 4. : 충청남도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충남연구원)

5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1.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주요 업무

- ① 갈등현장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한 지원
- ②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 ⊙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배포, 활용
- ⊙ 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 ①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 및 연구
- ② 갈등의예방및해결을위한정책·조례·제도·문화등에관한조사및연구
- ⊙ 상생 · 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 충남연구원

Ⅰ.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V)

✓) 2018년 주요 추진성과

- ⊙ 갈등영향분석 연구
 - 도, 시·군 선정 2건 수행
-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 갈등관리 기획과제 연구 1건 수행
- ① 공공기관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충남도, 시·군, 지방공기업 대상 총 5회 개최
- ⊙ 공공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① 갈등관리관계관 교육연수 개최
- ⊙ 갈등동향분석 4회(8건) 부분 발간
 - 열린충남 '상생+협력'부분 발간
- ① 갈등관리현장지원
 - 3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지역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2건)
- ⊙ 공공갈등연구팀 운영을 통한 갈등관리관계관 업무지원

II. 2019 업무계획

II. 2019 업무계획





추진방향

- ① 공공갈등 연구의 다양성 확보 및 협력적 연구 수행
- ① 충청남도 갈등관리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 정보 공유
- ⊙ 충남도, 시·군 협력관계 강화
- ① 공공갈등 유형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갈등관리 전문기관 운영 기본방향

공공갈등 연구를 통한 갈등관리 역량 지원



9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II. 2019 업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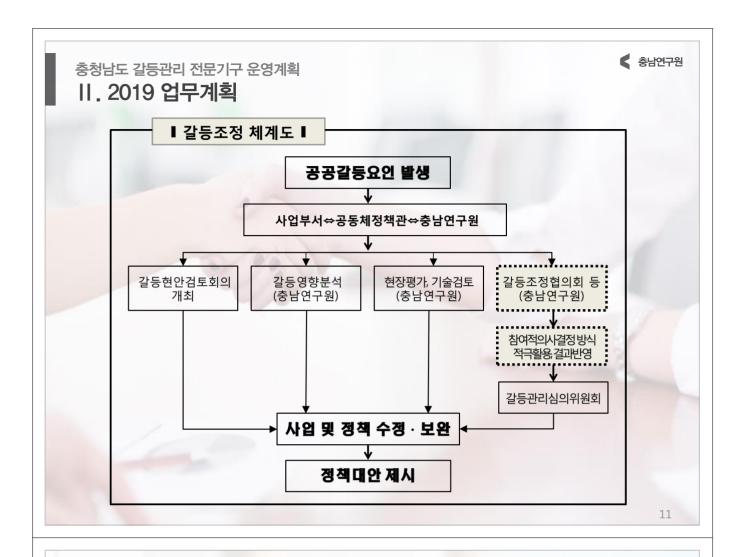




주요 업무계획

- ⊙ 공공갈등 연구의 다양화, 영역확대
 - 공공갈등의 유형 및 대상 다양화로 연구영역 확대
 - 공공갈등 기초연구,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연구기능 강화
 - 道, 시·군 연구과제 수요 발굴을 통한 연구영역 확대
- ① 갈등관리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정보의 공유
 - 갈등관리 지원체계 정비 및 관련정보 공유를 통한 갈등 예방·해결 지원기능 강화
 - 충청남도의 내적 갈등해결을 위한 초기 대응방안 마련
 - 공공갈등 평가분석보고서 작성 및 공유를 통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지원
 - 공공갈등 예방(현장간담회, 조정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갈등관리 과정의 집중적 지원활동 강화

10



II. 2019 업무계획



주요 업무계획추진 방향

① 道, 시·군 협력관계 구축

- 道, 시·군간 협력관계 강회를 통한 갈등 초기단계의 맞춤형 자문(컨설팅) 강화
- 공공갈등의 유형, 道 및 시 · 군의 여건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정책제언
- 정책소통 강화를 통한 연구수요 발굴

① 공공갈등 유형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 연구원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 갈등유형에 따른연구 및 교육, 지역 · 분야에 따른 이론 및 현장전문가 발굴 및 활용
- 연구원의 내·외부 전문가 등의 갈등조정을 위한 역량강화 및 조정활동 지원

①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

- 공공갈등의 효과적 대응 및 갈등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공공기관 교육 강화
- 과정별, 참여자별 갈등관리 지식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12

< 충남연구원



자율관리어업과 갈등관리방안

- 충남연구원 김종화 책임연구원



목 차

- 1. 충남 어업·어촌의 현황
- 2. 수산업 여건과 자율관리어업
- 3. 자율관리공동체 육성방안
- 4. 어업어촌 갈등관리 방안
- 5. 갈등관리를 통한 어촌활성화 사례

I. 충남 어업·어촌의 현황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 충남 어업 · 어촌의 기본 현황

01 충청남도 연안 인접 시·군 총 7개 지역

- 연안지역 면적: 3,874.8km²
- ─ 전체 도민 2,143천 명 가운데 939천명 (5.2%) 거주 (2016년 말 기준)
- 내륙지역인 내수면에도 내수면 어업계 74개소가 조직
 - → 어업계원 1,384명이 각종 내수면어업에 종사

02 충남 어업 · 어촌 일반 현황

- 충남 어가 수 8,175 가구 / 어가인구 1만 8천명, 어촌계 167개소(16,162명) (2015년 제3차 농림어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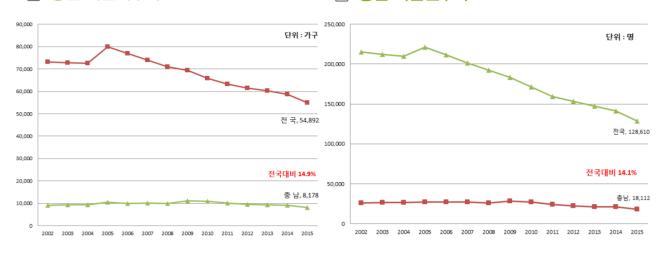
전국 대비 충남도의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수 현황 (2015.12.31기준)

구 분	전 국	충 남	대 비(%)	비고
어업가구	54,892	8,178	14.9	
어가인구	128,610	18,112	14.1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 충남 어업가구수

^[1] 충남 어업인구수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중남 어업 · 어촌의 기본 현황

02 충남 어업 · 어촌 일반 현황

- 해안선 길이: 1,242km / 갯벌 면적: 357km² / 유무인 도서: 268개

충남도의 해안선 및 갯벌, 도서 현황 (2015,12,31, 기준)

-110114		도 서							
해안선 (km)	갯벌 면적 (km²)		유 · 무인	토	면 적	세대수	인구		
(NIII)	(Nii /	계	유인도	무인도	(km²)	세네ㅜ	긴구		
1,242	357	268	33	235	164.218	8,754세대	16,765명		

주요 어항은 총 61개로 전국의 6.1%를 차지

전국 대비 충남도의 어항 및 항만 지정 현황 (2015,12,31, 기준)

7 8	하게		하다.			
구 분	합 계	소 계	국 가	지 방	어촌정주	항 만
충 남	68	61	8	29	24	7
전 국	1,053	993	109	285	599	60
대비	6.4	6.1	7.3	10.1	4.0	11.7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 충남 어업 · 어촌의 기본 현황

02 충남 어업 - 어촌 일반 현황

- 어촌계수: 167개소 (전국 대비 8.3%) / 어촌계원: 16.162명 (전국 대비 11.7%)

충남도의 어촌계 일반 현황 (2017.3. 기준)

구 분	계	보령	서산	당진	서천	홍성	태안	아산
이국레	167개소	26	18	7	19	7	89	1
어촌계	(100%)	(17%)	(10%)	(4%)	(11%)	(4%)	(54%)	(-%)
	16,162명	4,019	1,126	1,133	1,519	634	6,852	79
어촌계원	(100%)	(23%)	(8%)	(8%)	(10%)	(5%)	(46%)	(-%)

- 수산업 경영인 총 1,690명 (수산업 경영인 내 전업 경영인 393명임)

충남도내 수산업경영인 현황 (2015,12,31, 기준)

구 분	계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내륙
합 계	1,690	503	13	113	80	295	52	550	84
어업인후계자	1,276	376	11	93	56	230	42	418	50
 전업경영인	393	112	2	19	24	63	10	130	33
선도우수경영인	21	15	0	1	0	2	0	2	1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중남 어업 · 어촌의 기본 현황

02 충남 어업 · 어촌 일반 현황

- 충남도내 수협: 총 8개소 / 조합원수 18,835명 / 위판장: 총 27개소

- 지율관리어업공동체 매년 8개소 정도가 지정 (총 128개소 10,045명이 참여)

충남도내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선정 현황 (2015.12.31. 기준)

구 분	계	200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	128	49	1	13	11	8	9	8	8	8	8	5

- 내수면어업 가구: 284호 (전국 대비 7.8%)

내수면 인구: 1,458 (전국 대비 7.9%, 전업 862, 겸업 1,384)

- 수산물가공업 등록 업체수 : 총 298개소 (전국 대비 10.3%)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 충남 어업 · 어촌의 기본 현황

02 충남 어업 · 어촌 일반 현황

- 귀어가구: 340가구(2위) / 전남: 343가구, 경남: 91가구, 전북: 86가구

귀어가구원수의 시도별, 성별 현황 (2016년 기준)

				_,					
구분	귀어가구원			귀어인			동반가구원		
구군	합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전국	1,446	847	599	1,073	689	384	373	158	215
인천	70	38	32	58	34	24	12	4	8
울산	8	6	2	6	4	2	2	2	_
경기	24	17	7	19	15	4	5	2	3
강원	31	21	10	14	12	2	17	9	8
충북	7	4	3	6	4	2	1	_	1
충남	505	269	236	389	217	172	116	52	64
전북	118	70	48	98	60	38	20	10	10
전남	500	311	189	358	254	104	142	57	85
경북	28	11	17	24	10	14	4	1	3
경남	143	93	50	91	72	19	52	21	31
제주	12	7	5	10	7	3	2	_	2

충남 어업 어촌의 현황

중남 어업 · 어촌의 기본 현황

02 충남 어업 · 어촌 일반 현황

- 귀어가구: 340가구(2위) / 전남: 343가구, 경남: 91가구, 전북: 86가구

충남도 귀어가구원수의 전북 및 전남 연령별 비교 (20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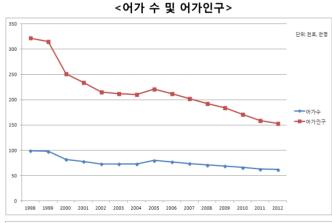
			. —			,	
	구분	합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귀어가구원	1,446	436	293	447	207	63
전국	귀어인	1,073	207	253	398	176	39
	동반가구원	373	229	40	49	31	24
	귀어가구원	505	131	99	166	96	13
충남	귀어인	<u>389</u>	<u>58</u>	90	<u>148</u>	84	9
	동반가구원	116	73	9	18	12	4
	귀어가구원	500	168	110	136	53	33
전남	귀어인	<u>358</u>	<u>81</u>	90	<u>121</u>	<u>43</u>	<u>23</u>
	동반가구원	142	87	20	15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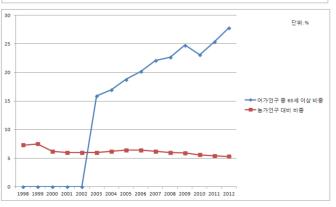
2. 수산업 여건과 자율관리어업

우리나라 수산업의 여건

❖ 내적 약화요인

-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 ⇒ 지속가능한 발전 저해
- 어업인 간의 업종별·지역별 분쟁
 - ⇒ 어장축소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무분별 한 어획경쟁
 - 자원과 어장의 이용권에 대한 갈등 심화
 - 한·중·일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설정에 따른 어장의 분할로 불법어업 증가
- 조업분쟁과 불법어업
- ⇒ 어업 전반의 비효율적 경제구조를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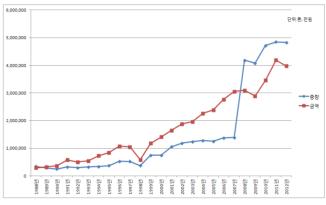
자료: e-나라지표

우리나라 수산업의 여건

❖ 외적 약화요인

- 1994년 UR협상을 기점으로 수산업이 외부영 향을 받음
- 1997년 이후 수산물 수입자유화로 인해 무역 수지 적자로 전환
- 인근 국가와의 분쟁
 - → 1977년 5월 일본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 역(EEZ) 선포
 - 어장축소, 어업자원 감소, 일본과의 분쟁 및 국내 어업자간 분쟁
 - 1998년 11월 신어업협정 타결
 - ⇒ 서해안에서 중국과의 분쟁
- WTO/DDA 협상 타결 시 수산보조금 지원, 면 세제도, 어선건조 지원, 영어자금 등의 수산업 에 대한 정부 지원의 축소 또는 폐지 예상
- 미국, EU, 중국 등의 거대수산세력과 FTA 체결 및 협상

<수산물 수입 중량 및 금액>



자료: 수산정보포탈

자율관리어업이란?

-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 수산물 수입증대와 어업자원 감소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해양생태계 파괴
- 한중일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 등
- ⇒ 어가경영 부실화, 어촌지역경제 위축



<u> 자율관리어업</u>

수산업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어업인 의 자발적인 힘으로 해결 어업인 스스로가 어업자원을 관리· 이용하여 풍요로운 어촌만들기

자율관리어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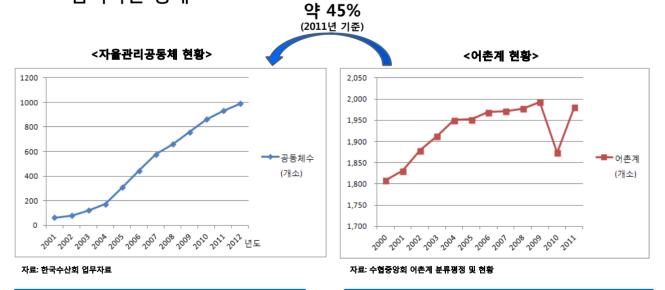
- ❖ 수산관련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지역별 어업별 분쟁해소,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 여하여 실천하여 운동
 -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 지역별 및 어업별 분쟁해소
 -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안정화, 어촌사회 발전
 - ▶ 추진사업
 - 어장관리: 어업자원의 산란 서식장 보호·보전
 - 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어업자원관리 수준으로 자원보전
 - 경영개선: 어업인들의 이익 극대화
 - 질서유지: 지역간·어업간 소득격차, 분쟁해결

자료: 자율관리어업 웹사이트

자율관리공동체

❖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는 유기적인 인적 결합체

► 기존 어촌계 또는 임의단체가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형태



자율관리어업을 실천하는 단체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자율관리어업의 특성

[새마을운동과의 비교]

- ❖ 새마을 운동 : 초기 정부주도의 하향식 접근방법(Top-down Approach)방식
- ❖ 1980년 12월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발족되면서 순수 민간차원으로 전환

❖ 새마을 운동의 특징

- 성장주의 : 빈곤퇴치가 목표
- 복지주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격차, 지역격차, 산업격차 의 최소화
- 양시주의: 시대적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국민 정신 적 측면도 강조
- 총체주의: 낙후된 농촌개발에 중점을 두지 않고, 종합적인 구조 조정으로 농업생산성향상 및 전통문화와 환경보전에 중점을 둠

자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의 새마을운동", 1999

자율관리어업의 특성

<자율관리어업과 새마을운동의 비교>

구분	지율관리이업	새미을운동
시작년도	2001년	1970년
대상	연·근해 어업인	초기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으나, 사업확산단계 (1974년)이후 도시로 확대
추진 주체	민간의 권한이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정부위주의 정책 추진	초기 정부위주의 정책으로 추진하였으나, 1980년 이후 민간에 정책/사업 이전
배경	수입수산물의 급등과 수산자원고갈에 따른 어촌경 제붕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함	국민 1인당 GNP가 10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 활성화 도모, 낙후된 농촌의 경제와 생 활환경 개선, 국민 의식과 행동혁신을 통한 사회 적 통합
목적	수산자원관리를 통한 어장환경개선 및 어촌경제 활 성화	농촌 경제와 생활환경 개선 및 도시 근로자 환경 개선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
방법	3단계를 통한 단계적 추진	5단계를 통한 단계적 추진
내용	수산자원관리, 어가경영관리, 어업질서유지, 어가소 득창출	주거·생활환경개선, 국민소득증대, 국민의식개 혁, 건전한 /\회풍토 조성, 경제안정

자료: 자율관리어업 웹사이트; 한국의 새마을운동, 1999

자을관리어업의 특성

잘 살기 운동

유사점

차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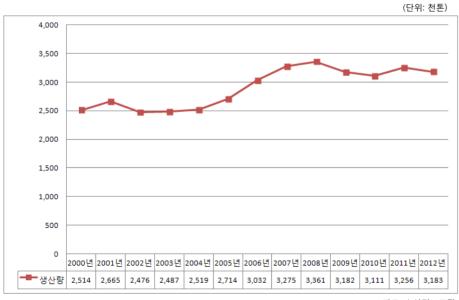
- 어업인, 농업인 등의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정책
- 단계별 발전전략을 통한 **체** 계적인 운동으로의 발전
- 초기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시작하였으나, 궁극적으로 민간정책으로 전환 유도

- 규모의 차이 : 새마을운동은 범국가 적으로 추진, 자율관리어업은 수산 업에 한정
- 의식개혁 차이 : 새마을운동은 범사 회적 의식개혁, 자율관리어업은 수 산자원관리, 공동체 의식 함양 등에 중점을 둠
- 목적의 차이 : 새마을운동은 환경개 선 및 경제발전, 자율관리어업은 수 산자원관리를 통한 소득 증대

국민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득중대를 목표로 하는 정책

자율관리어업의 성과

<어업 생산량 추이>



자료: 수산정보포탈

- → 자율관리어업이 시작된 지 3년 후에 본격적으로 어업생산량 증가
- 우수 자율관리공동체는 지속적으로 소득 증가

자율관리어업의 한계

◆ 목적의 제한성

- 최초 어업자원관리의 목적으로 시작하였기에, 정책 틀 안에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
- 어업인의 요구로 육성사업비 지원내역 중 일부를 소득향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나 한계적임.

◆ 자율관리공동체의 불분명한 위계와 모호한 성격

- 기존 어촌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자율관리공동체가 존재함으로 서 경영효율성 저하, 어업인 소속감 저하, 불분명한 어업경영체 존재로 인한 내부갈등 유발 등의 가능성 있음.
- 기본적으로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내세우고 있어, 일종의 협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생산자의 공통된 권익을 위한 자발적 조직은 아님.

◆ 지역적 특성의 반영부족

- 어업의 특성상 지역별 해양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생산되는 어종이 달라 중앙으로부터의 정책 지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는 민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나, 현재까지 부재

3. 자율관리공동체 육성방안

목적의 제한성 극복

어업자원관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유지)



어업자원관리



수익장줄 (요통개선, 6차산업화, 어상공연계

❖ 유통

- 지역수협 중심의 유통망 확충(대형 구매처와 거래 등)
- 산지위판장 현대화 및 활성화
- 직거래 유도(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지직매장 운영 등)

❖ 6차산업화

- 지역별 거점 수산물 가공센터 운영
- 직매장 또는 체험마을 운영
- 수산상품 개발을 위한 수산식품관련 법령 정비 필요
-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어촌체험마을 사업과 통합 필요
- ❖ 어상공 연계(농상공 연계)
 - 6차산업화 외 지역 가공업체, 유통업체, 수출업체와 연계하는 어상공 연계 필요
 - 어상공 연계를 위해서는 공동체, 가공업체, 유통업체를 유기적으로 이어줄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

자율관리공동체를 사회적 기업화

(어촌계, 임의단체에 기반을 둔) 자육관리공동체



(사회적 기업으로의) (주) (**공동체**

- ◆ 사회적 기업 (Defourny J. and Nyssens, M, 2011)
 - **사회적 목적**: 공익적인 지향
 - 경제적 목적: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기업가적 역동성
 - **사회정치적 목적**: 지역사회에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시민적 성격의 사회적 자본 창출



공익적 가치 + 기업적 가치

사회적 기업의 목적	자율관리공동체의 특성
사회적 목적	공공재인 수산자원을 관리·보호하고, 어장환경을 개선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익적 목표를 지향.
경제적 목적	지속적인 어로활동을 통하여 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경제적 목표 지향
사회정치적 목적	어촌의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을 지향

지역적 특성의 반영

정부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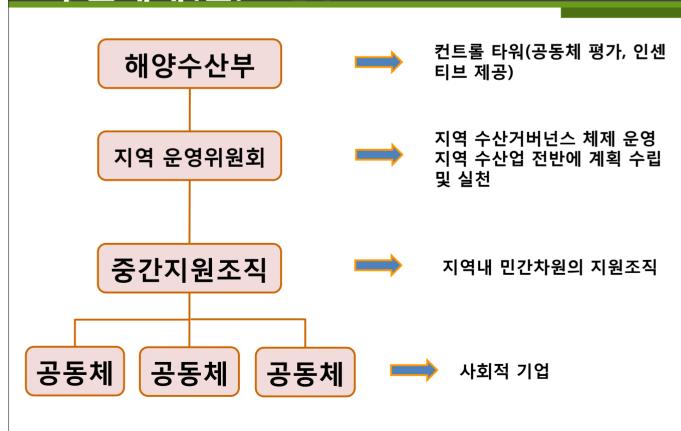
해수부 (컨트롤타워)



지역 거버넌스

- ❖ 해양수산부
 - 컨트롤타워의 역할 수행
 - 객관적인 공동체 평가와 육성사업비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 ❖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 시·도, 시·군, 어업인,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 수산운영위원회 구성
 - 공동체(사회적 기업) 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역 운영위원회 직속)
 - 지역 수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실천(지도, 교육, 소득창출방안 발굴, 사업 계획 심의, 지역 공동체 평가, 시·도 자체준수규약 제정 등)
- ❖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 민간차원의 지원조직(어업인 소득향상 전담)
 - 대어업인 교육(지역수협과 수산사무소 협조)
 - 6차산업화 및 어상공연계 지원
 - 지역 수산정책 창구로써의 역할

추진체계(안)



소결

- ❖ 기존 어업자원관리 중심의 자율관리어업에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 필요
- ❖ 기존 자율관리어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정 책적 유연성 부여
- ❖ 자율관리어업뿐만 아니라, 어업인 소득향상 정책과의 통합을 통하여 각 비즈니스적 요소간의 융·복합화 가능성 부여
- ❖ 공동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적 결합체로 발전
- ❖ 지역에 권한을 대폭 부여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공 동체)의 육성 가능성 부여
- ❖ 지역내 중간지원조직 육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

4. 어업·어촌 갈등관리 방안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 ❖ 자율관리어업의 주요 사업 중의 하나는 지역간 · 업종간 · 어업자간 분쟁조정 기능
- ❖ 수산업의 특성상 한정된 어장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 간 · 업종 간 · 어업인 간의 극한 대립과 경쟁은 어업질서를 해치고, 어장을 황폐화시키며, 어업인간의 불신을 갖게 하여 결국에는 수산업 전반이 악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작용
- ❖ 어업분쟁의 갈등은 마을어장을 둘러싼 마을어업자 간의 갈등, 마을어업과 어선어업의 갈등, 같은 어촌계 내의 구성원의 이견으로 생긴 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 산재되어 있는 어업관련 분쟁을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로 해결하고자 하여 설립된 것이 자율조정협의회
 - 자율조정협의회: 어업인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와 권익을 보호하고, 원만한 해결책으로 분쟁을 해결하여 올바른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민간 분쟁조정 기구
 - 현재 자율조정협의회의 구성은 자율관리어업내의 하나의 사업으로 구성
 - 규모가 매우 작으며, 중앙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중앙에서 파견된 1~2명의 분쟁조정위원의 활동이 전부
 - 분쟁조정위원의 활동은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분쟁조정의 효율성과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개편이 불가피
- ❖ 민간 분쟁조정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쟁조정후의 합의의 이행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속력이 있는 합의로의 전화 필요

어업갈등 사례

- 소형기선저인망의 경우 불법어업으로 인해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어업자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분쟁대상
-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은 계속되는 불법어획을 자원을 고갈시키는 원인으로 주목 되었으며 항상 인근 어촌계와의 갈등과 분쟁 초래
-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에 대한 근절은 자율관리어업의 최대 성과라고 여겨지는데 2002년 1,258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2006년에는 61건으로 급감한 것에서 보 듯이 지금은 어느 정도 근절되어 있는 상태
- 그러나 어업의 특성상 갈등의 소지는 항상 산재해 있고, 이러한 갈등은 언제, 어느 곳에서 분쟁으로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분쟁조정대책 필요

어업갈등 사례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기법을 이용한 대안적 분쟁조정 방법

7	·분	협상 (negotiation)	조정 (mediation)	중재 (arbitration)	조정적 중재 (med-arb)
	<u> </u>	필수요건	필수요건/예외	필수요건/예외	필수요건/예외
	개입	무	유	유	유
	중립성	불필요	필수요건	필수요건	필수요건
제3자	범위	-	민간/공공기관	민간/공공기관	민간/공공기관
	선정	-	쌍방합의	쌍방합의	쌍방합의
	역할	-	합의 도출	결정	합의 도출 결정
결정역	의 근거	쌍방 합의	쌍방 합의	증거자료와 중재인의 결정	증거자료와 중재인의 결정
결정의	구속력	쌍방 동의 필요	쌍방 동의 필요	구속력 있음	구속력 있음

5. 갈등관리를 통한 어촌활성화 사례

일본 오지카(小値賀)

❖ 위치: 일본 나가사키현(長崎県)

❖ 인구: 약 2600명

❖ 섬면적: 25.46km²

❖ 연간 방문객 수: 약 2만명

특이점: 오자카 아일랜드투어리즘을 중심으로 어촌생활을 관광아이템으로 이용. 어촌관광이후 섬이탈주민 없음.(주민주도의 체험관광모델)



자료: http://ojikajima.jp/index.php



하보마이 수산물 브랜드 중심의 어촌 활성화

• 지 역 명: 홋카이도 네무로시

• 추진단체명: 하보마이지구 마린비전 협의회

• 개요 및 현황

- · 지역 주요산업인 수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진흥계획 책정·각 액션플랜을 실행하기 위한 어업인, 어협, 지역 주민, 상공업 관광업, 농업·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여 2006년 협의회 설립
- ▶ 「어업경영」,「어촌교류」,「지역브랜드화」,「위생환경」의 4개의 전문 분회를 설치하고, 하보마이의 장점을 어필

• 특 징

- ▶ 지역상품등록으로「하보마이 다시마 간장」,「잇뽄다치 하보마이 꽁치」,「하보마이 다시마」를 출원하는 등 브랜드 및 상품 개발
- ▶ 활동내용에 대하여 홍보지(마린비전 뉴스)를 발행하고, 어협조합원, 어협계통단체, 관공서, 신문사 등에게 배포(850부), 네무로시 홈페이지에도 게재
- ▶ 「하보마이 다시마 축제」의 방문객 및 매출액 증가
 - 2007년 제 1회 2,500명(100만엔) → 2014년 제 8회 4,300명(230만엔)

• 향후 계획

- · 2004년 6월에 개설된 인터넷 통판 사이트「하보마이 생선시장」을 활용한 홍보활동으로 하보마이 브랜드 확립 및 판로개척 도모
- › 어업체험 프로그램 질적 향상, 로컬식당 개설 등을 통한 지역활성화 모색
- 지역 중학교에서 개최해 온 수산교실을 후계자 육성대책의 관점에서 적극 추진



〈생선요리 강습회〉



〈어업체험〉



〈다시마 축제〉

생산자와 음식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산지 브랜드화

- 지 역 명: 미야기현 센다이시
- 추진단체명: 토호쿠 식의 힘 프로젝트

• 개요 및 현황

- › 동일본 대지진 후 경제부흥 및 인재 인재육성을 위하여 생산자와 음식점으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발족
- › 2013년「식을 통한 지역 부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일반 사단법인화하여 먹거리에 특화된 활동 전개

• 특 징

- → 생산자와 음식점이 직접 거래·유통을 하면서 산지 브랜딩하여 생산자 활성화 촉진
- ▶ 센다이를 중심으로 행정·외식·생산자가 일체가 되는 해산물 판매 및 홍보 이벤트 개최
- ▶ 산지 직송 공동구입 참가 및 생산자와 음식점 간의 직접교류를 통한 수익성 향상
- ▶ 메뉴개발을 포함하여 지역식재료의 메뉴화 및 지역브랜드화 정착

향후 계획

- ▶ 지속성이 있는 네트워크 확립을 위하여 외식관련 기업과의 교류 및 월례 공부회 등 실시
- · 수도권 등의 소비자에게 지역 매력을 직접 호소하는 기회 제공
- › 일본 최초의 JR역 구내에 어업생산자, 음식업자, 수산가공업자들로 구성된 공설시장을 2015년 설립 예정



〈음식점과의 연계〉



〈어업인과 음식점과의 합동이벤트〉



〈어업인과 음식점과의 합동이벤트〉

어협 여성부가 경영하는 식당(어머니 가게)

- 지 역 명: 미야기현 오오아리이정
- 추진단체명: 오오아라이정 어협 여성부

• 개요 및 현황

- › 오오아라이정 어협 여성부에서는 시장가치가 낮은 생선에 부가가치를 제고시켜 가격 상승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 산 수산물을 이용한 식당 메뉴 및 가공품 등을 개발·제공
- 중소기업 진단사를 초대하여 경영공부회, 수산시험장에 의한 위생관리지도 등을 거쳐 2010년 4 월「어머니의 가게」를 오픈

• 특 징

- ▶ 신문·TV 등의 매스컴을 통한 지명도 확대로 도시 소비자 유치
-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어패류를 이용한 「어부요리」는 어업과 친근감이 없는 소비자들에게도 호평받아 어식보급 추진에 공헌
-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막대한 손해를 입어 일시 영업을 중지하였으나 81일만에 재개
- ▶ 정(町)에서 개최하는 이벤트 참가 및 신상품 개발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 향후 계획

▶ 휴일 및 연휴 등 고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식당이 협소하여 현재 규모 확대 중



〈어머니의 가게〉



〈인기메뉴〉



〈인기메뉴〉

직판과 요리교실을 통한 어식 보급

- 지 역 명: 효고현 타츠노시
- 추진단체명: 무로츠어협 여성부

• 개요 및 현황

- ▶ 무로츠어협 여성부는 1959년 발족한 이후 해안청소, 나무심기 등 바다를 지키기 활동 추진
- ▶ 「무로츠의 수산물을 식탁에」를 목표로 2002년부터 여성부가 어협과 공동을 운영하는 직매장「토토이치」를 오픈하고, 2004년부터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여 반찬류와 도시락 판매 등 개시
- ▶ 인근 직매장 「미츠」에서 개최하고 있는 「어부요리교실」을 통해 어식 보급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 특 징

- › 어협이 매매참가권을 갖고 있는 산지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하고, 매주 토요일에 개최되는 「토토이지」에서 선어뿐만 아니라 도시락과 반찬류도 판매
- ▶ 인근 대도시권에서 고객이 증가하여 연간 방문객이 15,000명 이상
- › 시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시가 무로츠어협 인근에 개설한 직매장 「미츠」등에서 시내 전 초등학교 4학년(약 800명)을 대상으로 어식학습 실시

• 향후 계획

› 현재 활동 중인 13명으로는 직매장과 요리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향후 체제정비를 통한 안정적 운영방안 모색



〈수산물 체험〉



〈어식학습〉



〈무로츠어협 여성부〉

어협 여성부에 의한 지역브랜드화

- 지 역 명: 에히메현 우와지마시
- 추진단체명: 유스어협 여성부

• 개요 및 현황

- › 유스어협 여성부는 지역자체의 브랜드화를 목표로 2008년부터 양식 참돔과 방어 등 지역 산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생산·판매 개시
- ▶ 2010년부터 「유스 부엌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유스 브랜드 홍보를 위한 이동 판매차(키친카)를 통하여 타베타이(돔을 활용한 주먹밥), 데리야키 스시(방어 데리야키 스시) 등을 현 외 지역에서 이동판매

• 특 징

- · 어협 여성부 활동의 정체성을 타파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년층의 회원과 단절하고, 2008년부터 활동의욕이 있는 부원을 새롭게 모집하여 조직 재편
- 신생 여성부로서 여성부장을 중심으로 여성부 전원이 지역 산 수산물 가공 판매 등 대응
- › 젊은 세대 참가가 확대되어 20대~60대까지 폭 넓은 세대가 진취적으로 활동
- ▶ 상품 개발·판매에서 전문가 의견을 참고하여 상품 패키지, 유니폼, 포스터 등 통일된 디자인으로 채용하고, 토털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브랜드화 추진

• 향후 계획

› 지역활성화와 대외적인 홍보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바다를 지키는 활동」과 「어식보급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사업 구상



〈키친카〉



〈타베타이〉



〈유스어협 여성부〉

감사합니다

제주도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제주도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 개발사업 및 상하수도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2019. 4. 25.

이영웅 사무처장

अ यान्द्रीय हि ल्ये

차 례

- 1. 제주의 환경 가치와 환경변화
-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 2-1. 지역개발정책
- 2-2.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 2-3. 양돈분뇨 처리문제
- 3. 나오는 말

■ 제주의 일반 현황



▮ 69만명 (2019년 3월 기준) 내국인 668,120명, 외국인 25,160명



▮ 1,849km² (전국의 1.8%) * 해안선 551.8km



약 7,800여종의 육상 및 해양 생물 서식 양질의 지하수 및 풍력자원 보유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람사르습지 등 국제보전지역

조대주화기원동면참

■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 가치

생<mark>물권보전지역</mark> (2002년 12월 지정)

● 한라산 해발 200m 이상, 서귀포 영천•효돈천 및 섶섬, 문섬, 범섬 등 일부 해상지역(830.94km)



M 저 주화 기상은 동면 참

■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 가치

세계자연유산 (2007년 7월 등재)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용암동굴계 (188.46 km², 제주도 면적의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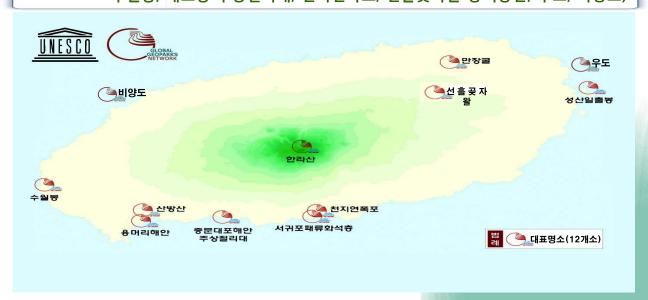


■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 가치

세계지질공원 (2010년 10월 인증

● 대상지역: 제주도 전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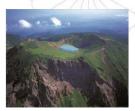
* 대표명소: 12곳(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서귀포 패류화석층,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대포동 주상절리대, 천지연폭포, 선흘곶자왈-동백동산, 우도, 비양도)



조대주화기운동면참

■ 세계가 인정한 <mark>자연환경</mark> 가치 -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

[대표명소 12개소]



한라산



성산 일출봉



만장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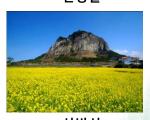
서귀포 패류화석층



천지연폭포



대포동 주상절리대



산방산



용머리해안



수월봉



우도



비양도



선흘 곶자왈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 가치

라사르습지 (2006년 ~ 2015년 등록)

- 대상지역: 5개소 (면적: 2.828km²)
 - * 물영아리오름 습지, 물장오리오름 습지, 동백동산 습지, 1100고지 습지, 숨은물뱅듸 습지



M 저 주화 기상은 동면함

■제주의 생명수 - 지하수

◆ 제주섬의 용천수

- ✓ 1960년대 이전에는 제주섬을 둘러싸는 해안선을 중심으로 용천수가 분포하고, 이 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됨
- ✓물허벅으로 대표되는 물이용 역사의 문화 는 물이 귀한 제주섬을 나타냄
- √한라산과 중산간에서 땅으로 침투한 물이 해안을 통해서 솟아오르는 용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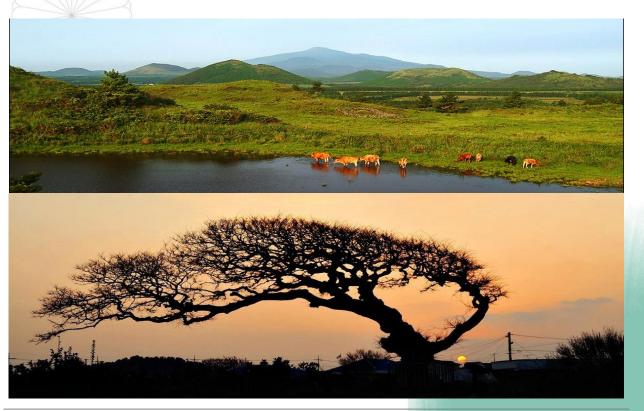




◆제주섬의 지하수

- ✓ 1960년대 이후에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제주전역에서 대규모 취락이 가능
- ✓물의 이용문화가 사라지고, 대규모 이용과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이 중요하게 됨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증가되어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과 이용이 어려움이 예상됨(섬지역공통)

■사진으로 본 제주의 경관 변화



≅सार्के गुरुह राजे







₩ 전1주호上7강운동·덴참





조시주화가운동면참



₩ 전1주호上73운동면참





₩ 전1주호173운동면참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 1) 지역개발정책(송악산 개발, 동물테마파크 등)
- 2)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 3) 영리병원 도입
- 4) 비자림로 확장공사
- 5) 양돈분뇨 불법 배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 6) 수요확대에 따른 기초시설 공급 및 운영난



2-1. 제주개발정책의 특성



✓ 1950년대 말부터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 외지자본의 투기 성행

✓ 구체적인 관광개발 지구지정이 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 증가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른 범도민적 반대운동

- ✓ 법안은 규제완화 및 개발촉진 내용
- ✓ 외지자본에 의한 난개발 우려
- ✓ 도민주체 개발 배제되어 개발이익 도외 유출 심각
- ✓ 1차 산업 보호방안 부재
-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제주개발문제 확대

M 저 주화 경운동면함





1988 10 02 > 한겨레 💌

이동

H 4 11 / 12 > H

현재 지면에서 찾기

0

18명이 제주땅 4.4% 소유

50만평 이상씩 차지…제주도민 5명 불과

제주도 땅을 50만평 이상 소유 하고있는 개인과 법인은 모두 18 명으로 이들이 제주도 전체면적 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 운데 제주도민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30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50만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 은 11명이고 법인은 7개로 이들 은 제주도 전체면적 5억5천2백만 평의 4.4%인 3천4백37필지 2천3 백93만2천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가운데 제주도민이나 마을 공동목장 그리고 제추도 소 재 기업 명의로 돼 있는 땅은 5 건으로(회사별 7위인 오라관광 땅은 대림산업 소유로 등기), 18 개 개인과 법인소유 토지 가운데 19%인 4백64만9천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81%인 1천9백28만3천평 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들 토지 가운데 27%를

차지하는 6백49만2천평은 80년 이후에 현 소유자가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제주도 땅에 대한 외 지인의 투기가 80년 이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 졌다. 현재 제주도에서 가장 많 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한양대 이사장 김연준씨의 부인 백경순(서울 중구신당동 340-29) 씨로 제주시와 북군에 1백37필지 1백47만6천평 규모의 한양목장을 소용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한진그룹 산하 제 동홍산(주)이 1위로 북제주군 애 월면 고대리 일대의 4백62만7천 평을 소유하고 제동목장을 경영 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또 그룹 부회장이 며 대한항공 사장인 조중건씨가 개인 5위로 북제주군에 71만6천 평을 갖고 있어 제주도에 모두 5 백34만3천평을 갖고 있다.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토지 50만평 이상 소유자 현황

순 위	성명	주 소	면적(천평)	소재지
1	백경순	서울 중구 신당동 349-29	1,476	제주시북군
2	홍국태	서울 종로구 청운동 8-2	1,057	북제주군
3	정창민	남군 표선면 마을 공동목장	912	남제주군
4	윤대섭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156	906	제주북·남군
5	조중건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7-73	716	북제주군
6	문희중	서귀포시 동흥동 1309-4	702	남제주군
VER 7	이상욱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78	남제주군
8	백공옥	일본(재일교포)	549	제주시
9	윤재천	서울 강남구 반포동 257-3	545	제주북·남군
10	정재호	서울 중구 필동3가 28-27	537	북제주군
11	김순협	북군 한경면 마을 공동목장	535	북제주군

순위	회 사 명	주 소	면적(천평)	소 재 지
1	(주)제동홍산	서울 남대문로2가 118	4,627	북·남군
2	(주)성읍목장	· 남대문로4가 17-42	2,983	남제주군
3	(주)제주축산개발	· 필동1가 43-1	2,320	북제주군
4	(주)남영산업	명동2가 52-7	2,281	남제주군
5	(주)반도축산개발	제주시 연동 103	1,709	북제주군
6	(주)대유산업	· 이도1동 1642-3	791	서귀포남제주
EVER 7	오라관광(주)	· 오라동 310 AVER	708	제주시

'觀光시설만 늘어 農漁業망쳐"

(漢州는 能像水기간 리를 무지하고 있는 본 추진하고 있는 그 바라 보다 등에 보다 한 분들이 되었다. 그는 사건이 되었다.

자

피

卫

개

발

0

0

財

獨

규

정

이 배당에 시공회사와 개 현대의 추인분간의 마음이 당대의 보기해왔고 현재 이 개지에에서 추진되는이 대 레위를 예정 및 파란대를 마

用 途 변경확대 **史 版 罰} 781-0114** 明 調 料 月空 5,000名 本等と 新田島県南部 ユ 東西県南谷 単字() 中の日日報社 1991 축 제28회 저축의 날 + 대한생명이 우수저축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惡法 먼지 400 연 계약자 여러분석 강사들합니다 대한생명

오늘의 紙面 **水原** 신도자 APEC 道 文

1991 11 08 한겨레 🔻

I((1 / 16) N

۵

서귀포 재야단체 청년 정부 강행 방침 비난 유서

【제주=허호준 기자】7일 오후 7 | 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 시4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276-1 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사무실 4층 옥상에서 나사청 전 간부인 양용찬(26·남제주군 남원 욥 신예리 676) 씨가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민자당 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 신한 뒤 12m 아래로 투신, 서귀 포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8 시께 숨졌다.

분신현장을 처음 본 인근 한라 종합장식 대표 김춘호(35)씨는 '근처 나사청 옥상에서 불길이 치솟아 달려가보니 양씨가 불길 에 휩싸여 있어 119 구급차로 시 내 서귀포의료원으로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숨졌다" 고 말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양씨가 온몸에 3도 중화상을 입고 호흡곤란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양씨는 분신 직전 옥상바닥에 남긴 대학노트 1장 분량의 유서 에서 "우리의 살과 뼈를 갉아먹 으며 노리개로 만드는 세계적 관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 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 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 와 이를 추진하려는 민자당 타도 를 외치며 이길을 간다"고 밝혔

양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평소와 다름없이 나사청 사무실 에 들러 이용호(27)씨 등 이 단 체 회원 3명과 함께 담소를 나누 다가 사무실을 나간 후 10분 뒤 에 분신했다.

양씨는 제주대 사학과 85학번 으로 1년을 수료한 뒤 중퇴하고 타일공 등을 하며 나사청 '지역 사랑' 분과에서 일해왔는데,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제주도개발특별 법 제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 아야 한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 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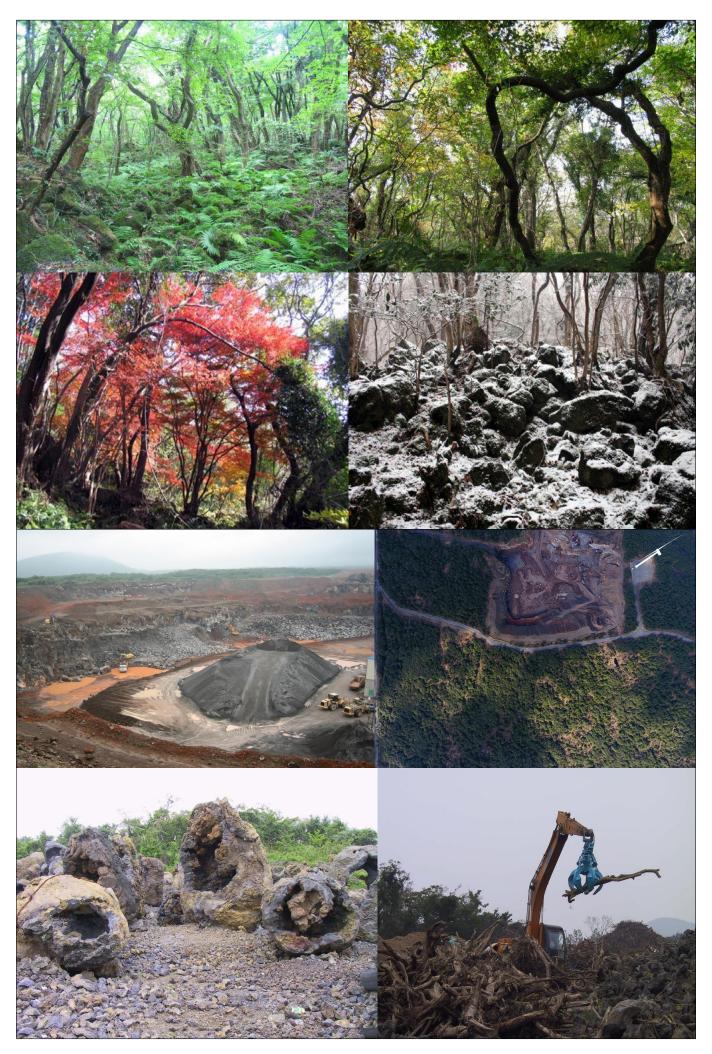
양씨의 주검이 안치된 서귀포 의료원 영안실 주변에서는 분신 사망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범 도민회 관계자와 대학생 등 1백 여명이 밤을 지새웠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정부·여당

이 관광진흥 등을 명목으로 '특 별법'을 제정하려 하자, "이 법은 제주땅의 상당부분을 소유하 고 있는 재벌의 마구잡이 제주 개발을 돕기 위한 특혜입법이며 자연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 이라고 주장하며 '제주도개발 특 별법제정반대 범도민희'(공동 대표 고창훈 교수 등 15인)를 결 성하고 각 지역별로 대책위름 구성해 꾸준히 반대운동을 펴왔

범도민회 관계자들은 정부·여 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 을 통과시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밀주당** 및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 실 등지에서 이날로 6일째 철야

농성을 계속해왔다.





<그래픽=박경훈>

四对子弘治是安吃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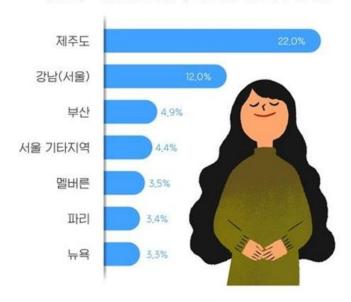
2-1. 제주도 개발정책 갈등 프레임

제주도	지역주민	환경단체
❖ 지역경제 발전 ❖ 대규모 민자(외자)유치	❖ 주민 소외된 개발 반대 ❖ 환경파괴 및 마을공동체 훼손 우려	❖ 환경 훼손, 공동체 파괴❖ 지속가능한 발전정책 전환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할 것	외지자본 중심의 개발로 마을환경파괴, 개발이익 도외 유출 우려	
▶ 대규모 민자(외자)유치 통 한 대규모 개발이 경제적	▶ 주민참여 개발정책 필요	개발과정에서 찬반 갈등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 파
파급효과 크다	▶ 일부 주민들은 개발사업	괴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관광수요 창출과 성장동력 견인 필요	유치로 마을발전 기대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정 책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 높이는 개발정책 필요

四天山子弘子是安吃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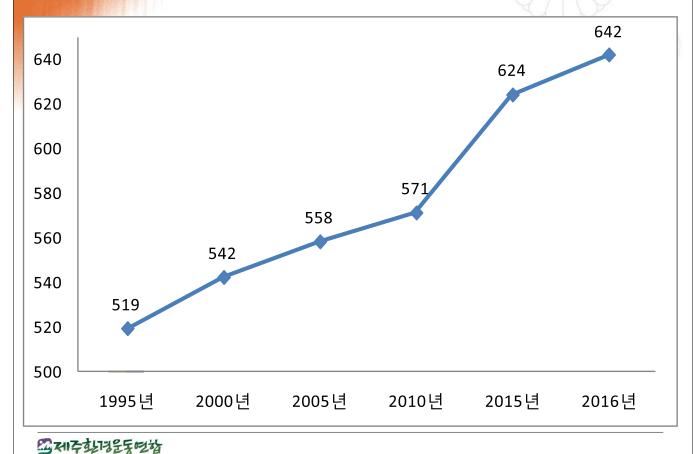
* 직장인 1,462명 설문조사 결과, 자료제공: 잡코리아X알바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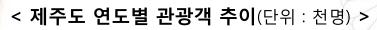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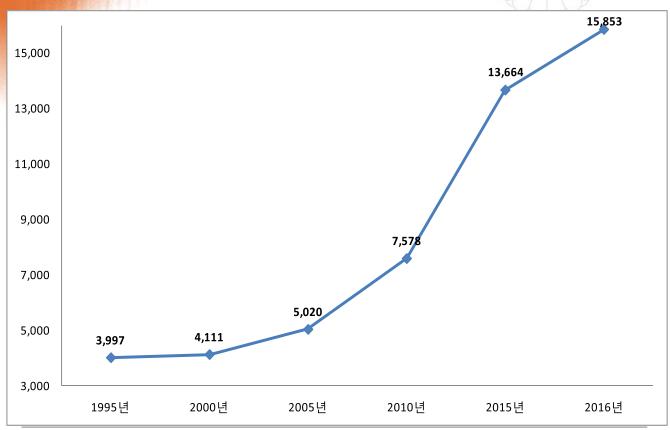
JOBKOREA × albamon

四저구화가운동면참

< 제주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추이(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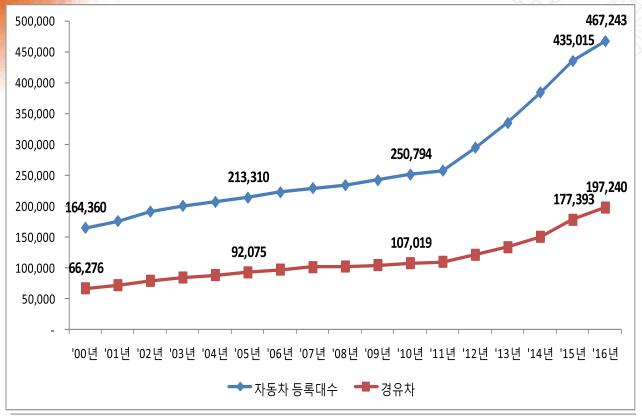




	_		
7	冷起	INO F	
	- a L	17-19	017
KARA A	1-2-	01-	1-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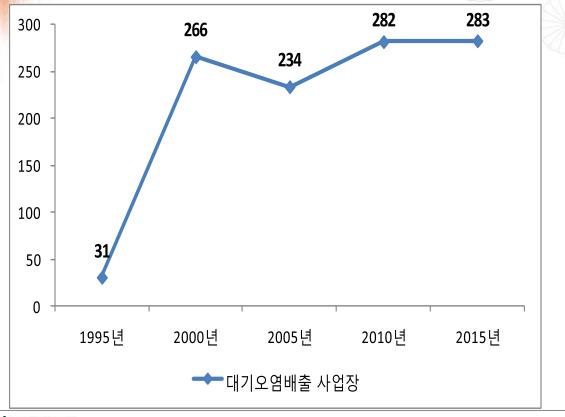
저비용항공사별 제주 노선 취항 경과		
	티웨이항공 (전, 한성항공)	2005년 8월 : 청주~제주 노선 취항
	제주항공	2006년 6월 5일 : 서울(김포)~제주 취항 2006년 8월 25일 : 제주~부산 취항 2008년 6월 13일 : 청주~제주 취항
	진에어	2008년 7월 17일 : 서울(김포) - 제주 취항 2009년 4월 3일 : 부산 - 제주 취항
	에어부산	2008년 12월 1일 : 부산~제주 노선 취항
	이스타항공	2009년 1월 7일 : 김포 - 제주 노선 취항 2009년 2월 14일 : 군산 - 제주 노선 취항 2009년 6월 12일 : 청주 - 제주 노선 취항
	₩ 전제주화기3운동면참	

< 제주도 연도별 자동차 등록 및 경유차 현황(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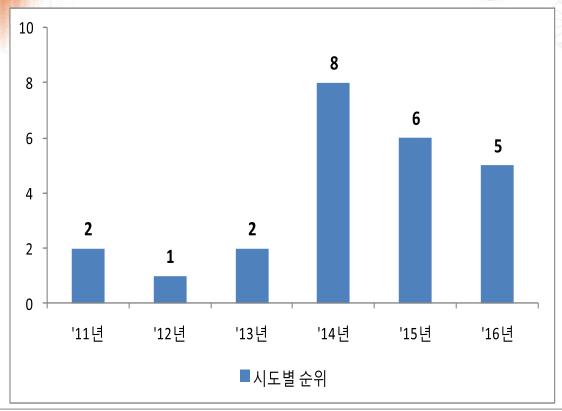


조대주화기원동연합

< 제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추이(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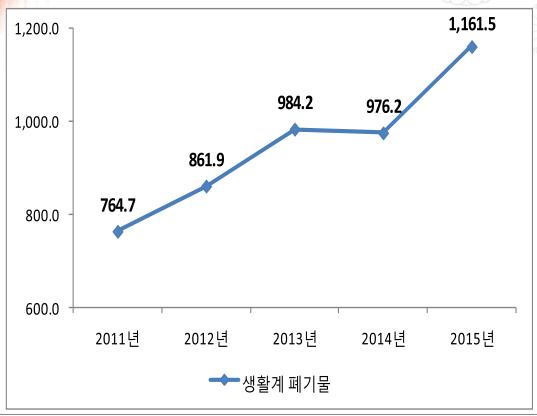


< 시도별 미세먼지 대기오염 청정도 제주도 순위(2016. 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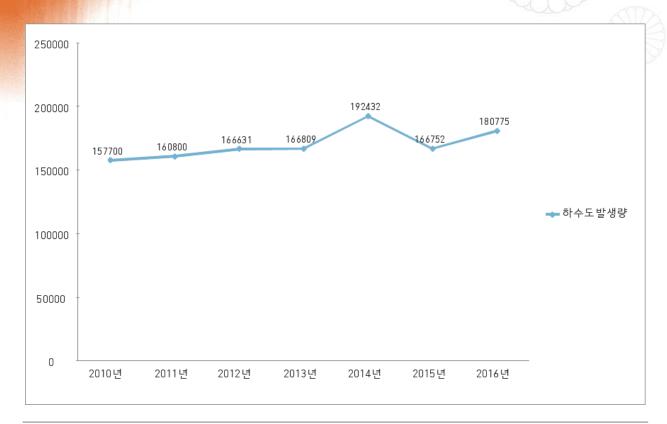
四저구화가운동면참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 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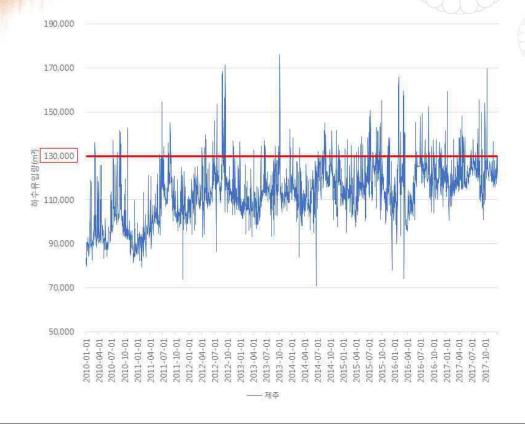
公本日子弘子記を見替

< **하수 발생량 현황**(단위: m³/일)>



四对子並沿是妄吃首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하수유입량 일별현황(2010 ~ 2017)>



₩ 제주화 개운동면참





일반 >

三無島라더니 범죄율 1위...'환장의 섬' 제주도







최종수정 2018.08.01 14:47 기사입력 2018.08.01 10:31

댓글 쓰기

Ⅰ 지난해 10만명당 범죄건수 4773.8건으로 전국 1위



사회 관광객 줄자 범죄도 줄어...제주의 '딜레마'

일반 ~

관광객 줄자 범죄도 줄어...제주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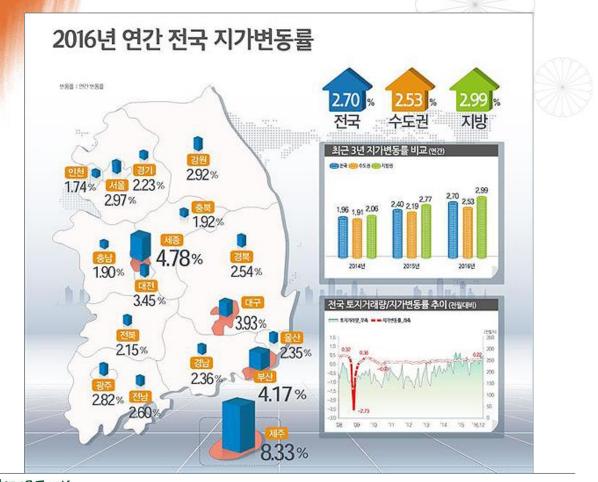
최종수정 2019.01.27 10:26 기사입력 2019.01.26 13: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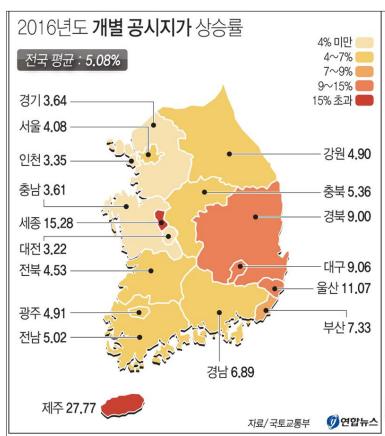
2017년 '사드 갈등' 중국 관광객 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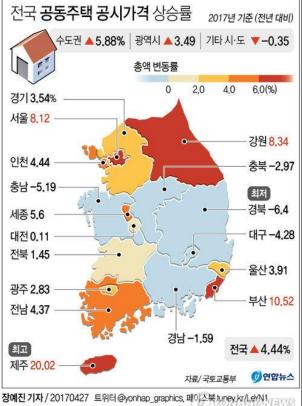
제주 범죄발생비 급감

사건사고 상당수는 '교통 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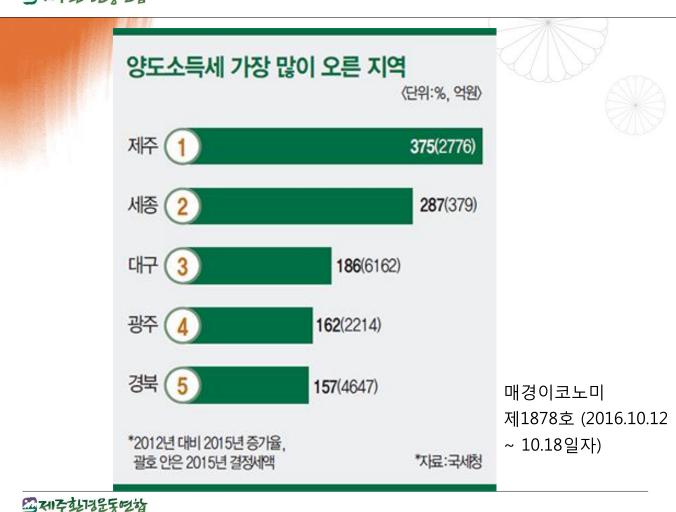
조제주화경운동면함







四对子弘治是东西站



제주의소리

2018 2 24 토 최종펴진 15:57

뉴스 소리TV 오피니언 소리매거진 기획·연재

줄지 않는 제주 가계대출...빛 '눈덩이'

문준영 기자 moonsoyo@jejusori.net ■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16:35 0면

제주지역 가계대출 추이



주 :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감률 비교



주 :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한국은행

四对子並沿是东西站

시도별 총소득 대비 부채 비중 상위 5개 지역 단위: %, 2017년 2월 기준. 116.5 109.8 109.4 109.3 100.9 제주 대구 인천 경기 서울 자료: 통계청



317.1

314.0

302.5

302.1

301,7 2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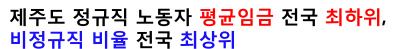
291.6 288.5

400 ^비 **⑦연압뉴스**

267.8

245.5

300



<14년 지역별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

규분	계	서	부	[]	인	광	디	물	경	강	*	*	전	전	경	경	저
구분		量	산	구	천	추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추
실임 퓹	3.5	4.5	3.8	3.9	4.7	2.8	3.4	2.7	3.4	3.1	3.0	3.4	25	2.9	29	25	2.0
비정 규직 비율	324	323	325	31.3	30.6	<u>397</u>	<u>38.1</u>	26.5	29.7	419	33.8	321	<u>395</u>	38.9	33.5	28.4	421

자료 : 고용노동부(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정규직 비율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M 저 주화 기상은 동변합

Los Angeles 47.4° 2018.02.22(THU)

자료/고용노동부

대전

경남 인천

충북

전북

광주 부산

강원

대구

제주

중앙일보

1 THE KOREA DAILY

☰전체 뉴스 오피니언 PlusNews CollegeInside ASK미국 HelloKtown J블로그 클럽

'지상 낙원' 하와이, 노숙자 급증 몸살

인구 비례 50개 주 중 최다 고물가·저임금 등에 거리로 관광업 타격에 사회갈등도



"하와이의 노숙자 증가는 제한된 섬이라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임금 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 정 부 대변인 신디 맥밀리언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노숙자 수는 7620명에 달하는데 그중 30%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이다. 월급으로는 살인적인 주거비 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1. 17)

조지주화가운동면참



M 저 지수화 기상은 동면함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는 하와이(817만명)나 발리(760만명)보다 많은 숫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5. 4. 제주도 방문시)



조지주화가운동면참



세계의 주요 섬 관광지 비교

	면적	인구	연간 관광객수
제주	1,833 km²	68만명	1,580만명(2016)
하와이	28,337 km²	143만명	865만 명(2015)
오키나와	2,281 km²	143만명	861만명(2016)
발리	5,700 km²	310만명	570만명(2017 외국인)

公されるまる記を回答



公される並は足を心な



2-2.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 프레임

제주도	피해지역 주민/시민단체
❖ 현 공항 포화 문제 해결로 관광객 증가❖ 제주경제 성장동력 될 것	❖ 환경수용력 초과, 과잉관광으로 도민 삶의 질 악화❖ 현 공항 확장으로도 현재 문제 해결 가능
 ▶ 현 공항 포화로 공항 확충 불가피 ▶ 공항 인프라 확장의 최적 대안은 기존 공항+제2공항 신설 ▶ 제2공항 건설로 제주관광객 2천만 시대 가능 ▶ 제주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제2의 성장 동력 될 것 ▶ 현 공항 포화로 안정성 위험, 제2공항 건설 시급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 생활환경 악화 등 주민 삶의 질 하락 ▶ 150만평 농지 수용으로 마을 해체, 소음 피해 불가피 ▶ 입지선정 과정의 불공정 평가(평가 조작, 은폐 의혹 제기) ▶ 제주섬에 2개의 공항 필요없어. 기존 공항 확장 통한 수용력 증가로 충분 ▶ 현 공항의 안정성 위험은 관제탑 인원부족, 시설노후 등으로 개선노력 없어서발생

<mark>■축 산 현 황</mark> – 양돈산업의 현 주소

- **♦ 축산농가 및 인구** 가 구 : 5,030호, 인 구 : 18,761명
- 가축사육현황(2016. 12월)

	축우		·		<u></u>	O.	OF H		
구 분	소 계	한 우	육 우	젖 소	돼 지	닭	할	양 봉	사 슴
호수	814	788	26	36	296	150	748	477	25
두수	31,103	29,870	1,233	4,068	564,915	1,672,168	15,081	71,284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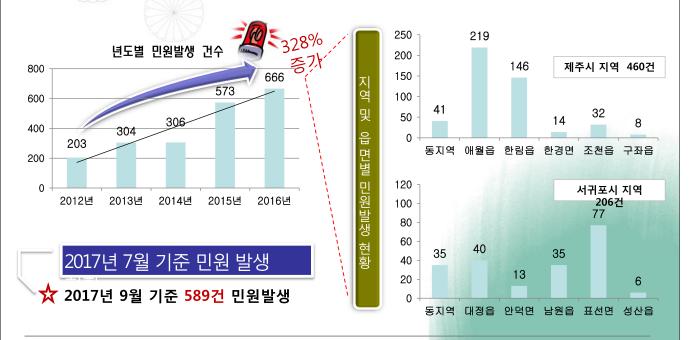
- ♥ 2016년 축산분야 조수입 : 9,449억원
 - <u>양돈 4,071</u>, 말 685, 한육우 726, 양계 471, 젖소 181, 양봉 223, 기타 3,092
 - 농가당 조수입 187백만원
- 양돈산업 고소득 축산업으로 자리매김 제주 대표 브랜드 부각
 - 양돈산업의 발전 → 양적발전 및 고객 다변화를 통한 소비확대
- ♥ 양돈산업의 발전 이면 에는
 -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관광객 등과의 갈등 증폭
 - 청정 제주 이미지에 대한 관광객의 불신

조제주화경운동면참

<mark>■축 산 현 황</mark> – 양돈산업의 현 주소

● 지속적인 양돈장 민원발생 건수 증가

('12년) 203건 → ('13년) 304 → ('14년) 306 → ('15년) 573 → ('16년) 666



M 저 주화 기상은 동면함

축산분뇨 1만3000여톤 숨골에 배출 양돈농가 3곳 적발

음 홍석준기자 │ ② 승인 2017.09.05 11:25 │ ◎ 댓글 0

제주도자치경찰단 중간 수사 결과 농장주 2명 구속·4명 불구속 입건 "숨골 유입 알면서도 계획적인 범행" ··· 관리 소홀 축산당국도 책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의 김동규 경찰정책관이 가축분뇨 유출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숨골로 스며든 축산폐수 용암동굴로 '콸콸'

음 좌동철 기자 │ ② 승인 2017.08.29 │ ◎ 댓글 0

유산본부 현지조사...동굴 바닥 분뇨뻘에 악취 진동



▲ 29일 세계유산본부 전문가들이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모 채석장 인근에서 축산분뇨로 오염된 대형 용암동굴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 양돈장 분뇨 연간 9만t 이상 무단 방류 추정

송고시간 | 2017-10-16 14:36



배출량보다 처리량 적은 49농가재활용업체 추가 조사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 양돈장들의 분뇨 배출량 중 9만t 이상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돈 악취에 뿔난 한림주민들 "불법 농가 구속하라"

음 이승록기자 (leerevol@naver.com) │ ② 승인 2017.08.29 14:21 │ ◎ 댓글 12















한림읍 주민 수백명 읍사무소서 단체행동...솜방망이 처벌 규탄



방류사건 일파만파...양돈업계 "사죄드립니다"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

승인 2017.09.01 1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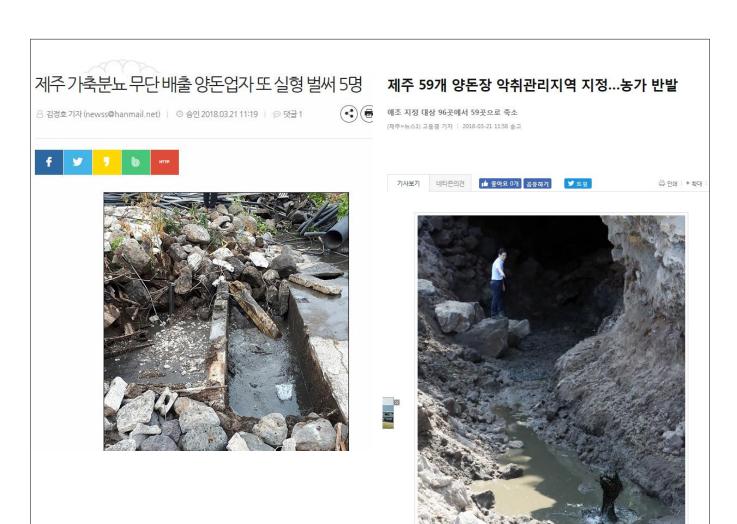




제주양돈산업발전協, "경찰 수사 최대한 협조" "위법농가 제명조치...개발방지대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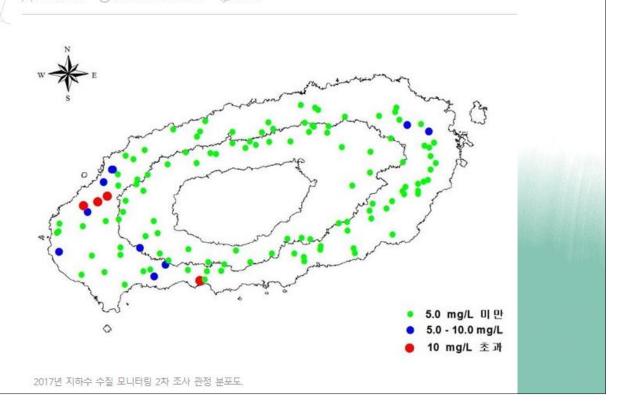
▲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 관계자들이 축산분뇨 숨골 무단방류사태와 관련해 공식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 다. ⓒ헤드라인제주



양돈장 밀집 서부지역 지하수 오염 심각

제주보건환경연구원, 한림.대정 수질기준 10mg/L 초과 1개 관정은 분뇨에 의한 오염으로 분석…오염원 추적중

○ 이기봉기자 ○ 승인 2017,10,24 10:37 ○ 댓글 0



2-3. 양돈분뇨 처리 갈등 프레임

제주도	양돈업계	지역주민
❖ 양돈산업 체질 개선❖ 무단배출농가 퇴출 정책	❖ 무단배출농가 제재 필요❖ 규제 강화로 양돈산업 위축 우려	❖ 관련 규정 강화 촉구❖ 환경피해 원인규명 철저
강력한 규제로 축산 악취와 분뇨처리 집중화	일부 양돈농가의 분뇨 불 법 배출 제재 불가피	불법배출농가 강력 처벌
▶ 중장기 사육두수 총량제 도입	환경보전기금 조성과 사회 공헌 확대	환경법 강력 개정 촉구불법배출로 인한 환경피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운영	악취관리지역 지정운영방식에 대한 우려	조사 철저

조세주화경운동면참

3. 나오는 말 - 갈등 관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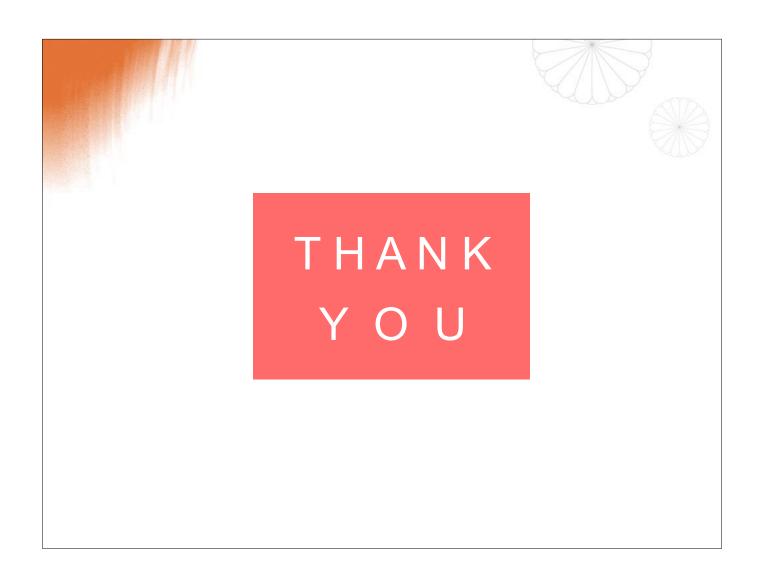
❖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정책참여 활성화

- ✔ 도정의 정책과정에서 투명성 확보로 주민의 신뢰 회복
- ✓ 주민의 정책참여 강화로 공공갈등 예방 및 최소화

❖ 수요관리 중심의 개발정책 시행

- ✔ 관광객의 양적 포화 등 환경수용력 한계 도달
- ✔ 인프라 확대 등 수용능력을 늘리는 정책으로 해결 어려워
- ✔ 섬의 환경과 특성에 맞는 수요관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조제주화경운동면참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 2010-11-10 조례 제 3544호 (일부개정) 2014-07-10 조례 제 3915호 (전부개정) 2014-12-30 조례 제 39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공공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성숙한 지방자치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합리적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하다.
-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간의 충돌을 말한다.
-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4. "갈등영향분석"이란 갈등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하기 전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이나 요인을 조사·분석 및 그 영향의 정도를 사전에 예측하고, 공공 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은 도내에서 발생하여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공공갈등으로 한다.
 - 1. 도정 갈등: 도의 정책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갈등
 - 2. 그 밖의 갈등: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갈등
 - ② 적용대상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도정 전반에 걸쳐 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공공갈등관리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2.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한다.
- 3. 소속 공무원에게 그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2장 예방과 해결의 원칙

-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 제6조(이익의 비교형량)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7조(갈등영향분석) ① 도지사는 주요정책 등을 수립·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 해야 한다.
 -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 충실히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1.「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제8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제9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추진
 - 2. 도 및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조정
 -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 4. 제4조 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 5. 제7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운영 참여
 -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0조(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 1.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2. 시민단체 대표
 - 3. 언론인
 - 4. 충청남도의회의장 및 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 ②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의 반영)**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 제14조(설치)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15조(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 2. 전문가
 - 3. 심의위원
 -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6조(의장 등)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7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장 갈등관리 전문기구

- 제18조(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활용 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갈등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갈등관리전문기관 등에 그 운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갈등관리 전문기구의 운영지정서를 교부한다.
 - ③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갈등현장 조정·해결 지원
 - 2. 갈등영향분석의 수행
 - 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배포·활용
 - 4. 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 · 연구
- 6. 갈등의 예방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 7.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 8. 그 밖에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19조(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점검·평가 등)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 제21조(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 갈등영향분석, 자발적·체계적 활동, 갈등 관리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남도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22조(비밀유지)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도지사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및 갈등관리 전문기구와 그 처리 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심의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